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6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1.

발 의 자 : 서영석 · 윤준병 · 한정애
이해식 · 남인순 · 김태년
윤종균 · 노종면 · 정일영
윤후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·강박 등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 그러나 현행법은 격리·강박의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「격리 및 강박 지침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이에 격리·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75조제2항 및 제85조제8호).

법률 제 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제2항 후단 중 “한다”를 “하고, 신체적 제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8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7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신체적 제한을 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5조(격리 등 제한의 금지) ① (생략)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.	제75조(격리 등 제한의 금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하고, 신체적 제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.
제8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85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제7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 여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신체적 제한을 한 자
--	---